

의안번호	2212236
의 퇴 인	김현정 의원
회 답 일	2025. 11. 10.
추계번호	25E44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배당기업 지급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7,238억원, 2031년 7,238억원 등 5년간 총 3조 6,188억원 (연평균 7,2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7,238	-7,238	-7,238	-7,238	-7,238	-36,188	-7,238

주: 해당 결과는 5년간의 세수효과를 제시한 것으로,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 - 고배당기업: 주권상장법인 중 요건 ① or ② 충족 ① 배당성향 35%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년도 대비 or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2	안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table><tr><td colspan="3">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td></tr><tr><td>2천만원 이하</td><td>2천만원 ~ 3억원 이하</td><td>3억원 초과</td></tr><tr><td>9%</td><td>20%</td><td>25%</td></tr></table>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9%	20%	25%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9%	20%	25%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2	안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6년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다음연도 5월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배당지급 시점 징수액에 변화가 존재하지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연간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다음해 종합소득 신고시점에 확정되어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수효과는 국세청 제출자료 및 기업 데이터 자료 등을 활용하며,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배당소득 구간별 1인당 평균 과세표준 및 배당소득을 추정하고,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한 종합소득세 한계세율과 분리과세 세율 간의 차이를 적용해 1인당 세수감소액을 추정
 - 1인당 세수감소액에 신고인원 수를 곱하여 전체 감소액을 계산 후, 전체 배당소득 중 유가증권상장사 비중 및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기업의 배당금 비중을 적용해 세수효과 추계
 - 전체 배당소득 중 유가증권상장사(코스피·코스닥) 비중은 49.5%¹⁾로 가정
 - 유가증권상장사의 현금배당액 중 개정안의 고배당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배당액 비중은 약 44.5%²⁾
 -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은 세율(9%)을 적용하므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가로 고려³⁾⁴⁾

1) 유가증권상장사의 현금배당액('21~'23년 평균 40.2조원, 한국거래소) 및 국내개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비중('21~'23년 평균 29.8%, 한국예탁결제원)을 고려해 추정한 수치임

2)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

3)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상 전체 배당액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의 배당소득 금액이라고 가정

- 동 추계는 제도변화로 인한 개인·법인의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에 따라 기업의 현금배당액 지급 규모 및 배당성향 등이 변화할 경우 세수효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함
- 고배당기업 배당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할 경우, 전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변동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는 불가능하므로 동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자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배당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

[표 2]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자료: 2020~2023년 평균

배당소득금액 구간별	신고인원 (A) (명)	배당소득금액 (B) (조원)	과세표준 ¹⁾ (C) (조원)	1인당 평균	
				배당소득금액 (B/A) (백만원)	과세표준 (C/A) (백만원)
2천만원 이하	74,934	0.5	11.1	7	149
5천만원 이하	69,791	2.1	9.5	30	136
8천만원 이하	18,902	1.2	3.7	62	198
1억원 이하	6,495	0.6	1.7	89	260
1.5억원 이하	10,036	1.2	2.8	120	284
3억원 이하	9,827	2.0	4.2	208	426
3억원 초과	9,632	14.6	20.0	1,511	2,072
계	199,616	22.2	53.0	111	266

주: 1) 개인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율변경 효과) 배당소득금액 구간별 1인당 평균 배당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세율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아래 표와 같이 계산

4) 세수효과는 현행 원천징수세율과의 차이(5%=14%-9%)를 고려하여 추계하되, 고배당기업 요건 비중 등을 반영하여 산출

- 배당소득금액 구간별 종합소득세 한계세율과 분리과세 세율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감소액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 배당소득금액 구간별 세수감소액(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배당소득금액 구간별	신고인원 (A) (만명)	1인당 평균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¹⁾ (%)	분리과세 세율 ²⁾ (%)	1인당 세수감소액 (B) (백만원)	전체 감소액 (A×B) (억원)
		배당소득 (백만원)	과세표준 (백만원)				
2천만원 이하	7.5	7	149	27.85	9.0	-1	-927
5천만원 이하	7.0	30	136	27.85	20.0	-2	-1,656
8천만원 이하	1.9	62	198	31.18	20.0	-7	-1,315
1억원 이하	0.6	89	260	31.18	20.0	-10	-648
1.5억원 이하	1.0	120	284	31.18	20.0	-13	-1,351
3억원 이하	1.0	208	426	33.40	20.0	-28	-2,737
3억원 초과	1.0	1,511	2,072	38.95	25.0	-211	-20,302
계	20.0						-28,936

주: 1) 배당소득금액 구간별로 1인당 평균 과세표준을 고려한 한계세율에 배당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산출
 1. 2020~2023년 귀속 신고자료의 평균치 기준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앞서 산출한 전체 감소액에 유가증권상장사 배당소득 비중 및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 비중 등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계산

- 전체 배당금 중 유가증권상장사 지급 배당소득 비중은 49.5%⁵⁾으로 가정
- 기업의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현금배당액은 유가증권상장사의 44.5% 수준으로, 세수효과 계산 시 이를 반영

[표 4] 고배당기업 법인 수 및 현금배당액: 2024사업연도 결산 기준

	코스피	코스닥	합계	현금배당액	비중
	(개)	(개)	(개)	(조원)	(%)
미배당	554	1,373	1,927	26.4	55.5
고배당기업	222	212	434	21.2	44.5
계	776	1,585	2,361	47.6	100.0

주: 1. 12월 결산법인 기준이며, SPC(특수목적회사) 등은 제외함
 2. 배당성향은 IFRS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지배주주 귀속분) 대비 현금배당(결산+중간, 우선주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2000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유가증권상장사의 현금배당액('21~'23년 평균 40.2조원, 한국거래소)에 국내개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비중('21~'23년 평균 29.8%, 한국예탁결제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2.0조원)을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상 국내법인 지급 배당금('21~'23년 평균 24.2조원, 국세청)으로 나누어 계산함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세수효과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상 전체 배당액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 차이 및 고배당기업 배당금 비중을 적용하여 반영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7,238억원, 2031년 7,238억원 등 5년간 총 3조 6,188억원 (연평균 7,2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7,238	-7,238	-7,238	-7,238	-7,238	-36,188	-7,238

주: 해당 결과는 5년간의 세수효과를 제시한 것으로,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